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8년 8월 14일(목)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가족양립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8년 8월 14일(목)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8월 25일(월)과 26일(화) 양일간에 걸쳐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 정책현황과 발전방향(Balancing Work and Family : Current Issues and Policy Directions)」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일가족양립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주제 : 『일과 가족의 양립 :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 일시 : 2008년 8월 25일(월) ~ 2008년 8월 26일(화)
- 장소 :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드룸

□ 심포지엄 개최에 대하여

- 한국의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문제를 선도해 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일과 가족의 양립 : 정책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
- 본 심포지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주한스웨덴대사관

의 협력 하에 마련되었으며,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의 후원하에 이루어짐. 25일에는 이인식 여성부차관의 축사가, 26일에는 울프 소르마르크 스웨덴 부대사의 축사가 있음.

- 첫째 날(25일)에는 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및 네덜란드의 일가족양립 정책을 소개하며, 각 국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둘째 날(26일)에는 스웨덴의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사례를 살피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함.
- 이에 본 포럼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일가족양립을 실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사회로 손꼽히는 스웨덴(별첨2 참조)을 위시하여, 최근 성공적인 노동 시간 정책으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주로 보육정책에 강조를 둔 적극적 정책지원 국가로 주목되는 프랑스, 그 외 캐나다, 일본 등 이미 국내에서도 명성이 높은 총 6개국의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국의 정책현황과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임.(별첨1 초청자 프로필 참조)
- 특히 스웨덴의 경우,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의 협력 하에 학자뿐 아니라 정부관계자(야모 Jamo; 평등고용기회 옴부즈만(별첨3 참조)), 기업 측 대표까지 참석하여 스웨덴의 폭넓은 경험과 사례를 소개해 줄 것임.

□ 본 심포지엄에서는

8월 25일 월요일

- 제1세션 : 수잔 루이스 교수(미들섹스대학, 영국)가 “영국의 일가

족양립정책 : 현황과 실제” 라는 주제로,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소장(파리 제1대학 경제연구소, 프랑스)은 “프랑스의 일가족양립정책 : 원칙, 내용과 성과” 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제2세션 : 리안 마흔 교수(칼튼대학, 캐나다)가 “영국의 일가족양립정책 : 현황과 실제” 라는 주제로, 로우라 덴 돌크 교수(유티레히트대학, 네덜란드)는 “ 일/돌봄 딜레마의 해법 : 네덜란드의 사례” 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제3세션 : 소마 나오코 교수(요코하마대학, 일본)가 “누구의 ‘일과 가족’, 누구의 ‘양립’인가? : 일본의 일가족양립정책” 이라는 주제로, 홍승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일가족양립과 정책방향” 이라는 발표할 예정임.

8월 26일 화요일

○ 제4세션 : 안 소피 두반더 교수(스톡홀름대학, 스웨덴)가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일-생활균형” 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제5세션 : 피아 앙스트림 린드그렌 부위원장(야모, 스웨덴)이 “스웨덴의 양성평등과 기회평등 옴부즈만” 이라는 주제로, 에바 홀트베리 인사담당이사(아스트라제네카, 스웨덴)는 “스웨덴의 일가족양립 지원” 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초청자 미디어 취재 지원

○ 이번 심포지엄은 각 나라의 일가족양립정책을 대표하는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 참석차 내한하는 초청자(별첨1 참조)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할 예정임.

-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내한하는 세미나 참석자들과의 개별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인터뷰하기를 원하는 일가족양립정책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문의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홍보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 바랍니다. 홍보담당 황애리(3156-7296)

□ 우리사회의 일가족양립 현황

-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양성평등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시도와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우리사회에서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 기본계획>,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 수립 등으로 일가족 양립사회를 향한 정책발전과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임.
- 이미 선진국에서는 맞벌이부부가 일상적인 가족모델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들의 “일-가족생활의 균형과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별첨 1. 초청자 프로필



1. Marie-Thérèse Letablier (프랑스)

- 파리 제1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 보육서비스 및 관련 노동력
- 유럽연합국가 돌봄정책



2. Suzan Lewis (영국)

- Middlesex대학교 조직심리학과 교수
- 유럽, 북미 및 일본의 일가족 문제 국제연구
- 일과 개인생활 양립에 대한 통념과 유럽 여성, 남성 및 가족 ("The Myth of Work-Life Balance : Women, Men Work and Family in Europe", 2007) 공동 저자



3. Rianne Mahon (캐나다)

- Carleton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보육 정치학
- 현재 일과 개인생활 조화정책 ("reconciliation of work and life" policies)에 관한 OECD 및 캐나다, 스웨덴, 한국정책 연구

4. Soma Naoko (일본) (사진 없음)

- 요코하마대학교 사회복지정책과 교수
- 한국과 일본의 보육정책 비교연구
- 한국 보육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5. Laura den Dulk (네덜란드)

- Utrecht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복지국가 체제 조직의 일가족 정책관련 비교연구
- 일가족정책에 대한 고위간부의 태도, 견해 및 행동에 관한 및 유럽 직장의 사회적 질에 관한 연구



6. Ann-Zofie Duvander (스웨덴)

- 스톡홀름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출산, 노동시장 행동, 가족 정책
- 부모휴가 사용이 여성 노동시장 경력에 미치는 영향
- 출산과 소득의 관계



7. Pia Engstrom Lindgren (스웨덴)

- 현 스웨덴 Jämo (평등기회 옴부즈만 - The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부위원장
- 전 European Commission 스웨덴 대표



8. Eva N Hultberg (스웨덴)

- 현 다국적 제약기업 AstraZeneca 조직변화 이사 (Director of Organisational Changes)
- 전 AstraZeneca Global Global HR Business Partner Director 인사담당이사
- 기업내 평등과 다양성 업무 및 글로벌 인재관리 총괄



9. Ito Peng (캐나다 - 사회자)

-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최근 경제 세계화, 인구변화, 가족 및 젠더/성(性)역할 변화, 정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사회정책개혁 비교
- 동아시아지역 복지국가 변환의 정치경제학

별첨 2.

양성평등 스웨덴이 걸어온 길

Karin Alfredsson

스웨덴의 인구증가

- 스웨덴 여성의 출산율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함(여성 1인당 평균 자녀수1.85명). 이런 배경에는 정치적 결단들이 있음.
- “부모보험¹⁾ 도입, 아동보육 확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의 정치적 결정이 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을 가능케 함.”(스웨덴 통계청, 헬렌 마르클룬드 인구통계관)
- 자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다시 자녀를 가질 경우, 이전 출산 이후 부모의 시간제 근로를 전일제 근로로 간주해 새로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모수당을 산정하도록 법을 개정 한 후 스웨덴의 출산 양상이 크게 달라짐.

아이들은 놀고... 어머니는 일하고

- 1970년대 초부터 세제와 국민보험상 남녀는 동등한 취급을 받음. 모든 개인에게 세금 부과(개인별 과세), 가족에 대한 공제는 없음.
- 부모보험은 스웨덴의 높은 취업률의 초석임. 새로 출범한 스웨덴의 정부는 부모 중 소득이 더 많은 쪽의 부모휴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양성평등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임.

유급고용(2005)

	20-60세 전체인구	전일제 고용	실업
여성	80%	49%	4%
남성	86%	72%	5%

보육시설 취원 아동(2005) (취학 전 또는 방과 후 보육)

1세	46%
2세	87%
3세	92%
4세	96%
5세	97%
6세	84%
7세	83%
8세	80%

- 1-9세 아동의 대다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에 다니며, 유아원과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됨. 2002년 보육비 상한선 도입 후 빈곤층을 제외한 대다수 부모들이 보육비를 감당케 됨. 또한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보육수당 제공.

○ 스웨덴 여성들은 고용시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스웨덴 여성 중 전업주부는 2%에 불과함.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높으며 이는 선택에 의한 것임.

노인보호

- 대다수 노인들은 남의 도움 없이 가정생활을 영위한다. 스웨덴 노인에게 제공되는 가장 보편적인 재가노인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정 도우미 서비스임. 스웨덴은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거의 드물고 원하는 노인도 거의 없음. 제도적 노인보호에 대해 노인과 자녀들은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국가의 부양과 보호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

아빠와 함께 집에

- 1917년부터 아버지를 가질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이때부터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친부 확인 노력을 하기 시작함. 1930년대부터 아버지가 자녀양육

1) 부모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모휴가 기간동안 수당 지급. 13개월 동안 평상시 임금의 약 80%(상한선적용)가 휴가수당으로 보전되며, 이후 3개월 간은 임금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일당 기준으로 지원됨.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 비 지급을 원치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어머니에게 수당 제공.
- 1974년에 아버지의 육아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 통과: 출산 후 부모휴가 시 국가 수당²⁾을 제공하는 부모 보험 도입(세계최초 남성 육아휴가 제도). 그러나 실제 남성의 휴가 사용을 저조(2006년 20%)
- 1995년 부모 간 양도가 불가능한 한 달간의 부모휴가 도입('어머니달', '아버지달' 각 한 달씩), 2002년 2개월로 늘어남. 양도 불가능한 부모휴가는 아버지들의 적극적 제도 활용으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옴.
- **남성 출산 휴가에 대한 저항**은 수면 아래 존재하나 남성의 부모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부모휴가 수당과 임금의 차액을 회사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기업도 있음.
- 나이가 젊은 아빠일수록, 부모휴가 활용에 적극적, 경제력이 낮고 근무 여건이 불안정 할수록 부모휴가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음.

양성평등을 주도하는 정치권

- 정치기구의 균등한 양성비율
양성평등 연구자인 예르트루드 오스트림은 “스웨덴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정부와 의회 내에서 완벽한 양성평등을 이루었고, 이는 할당제로 의존 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 여성 정치인은 전통적으로 남성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도 참여, 정부는 모든 입법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개념에 핵심적인 목표를 법안에 반영토록 함(성주류화)
- 하지만 스웨덴 민간산업의 최고 경영진에 여성의 수가 적은 것은 스웨덴이 소유과 권력을 분리한데에 있다고 봄.
- 달레푸프 교수는 “강력한 여성운동이 없었다면 양성평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 스웨덴의 양성평등 모델 뒤에는 복지국가, 여성운동, 현명한 전략이 있었음.

임금격차의 해소 - 힘겨운 싸움

월 평균 급여 (2005년)

	전 업종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민간부문 사무직
남	26,400	22,500	33,200	32,300
여	22,100	20,600	23,700	25,000

단위: 스웨덴 크로나, 업종별 및 성별(2005년 평균환율, 1SEK≒138원)

- 스웨덴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82%에 불과. 이는 어느 정도 임금격차에 원인이 있다고 봄.
- 1980년 스웨덴은 직장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처음 제정, 또한 이 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평등기회 옴부즈만'이 설립
- 이 법은 성차별 금지, 직장 내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
-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
- “최대 주범은 성별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는 인식”(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현상) 하지만 남성 지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도 남성 동료에 비해 급여 수준이 3% 낮음, 남성

2) 부모수당: 출산을 하면 부모수당과 함께 총 480일의 휴가가 주어짐. 이 중 60일은 아버지 60일은 어머니가 반드시 사용해야함. 나머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음. 390일 동안은 상한선 내에서 부모 소득의 80%가 수당으로 지급되고 추가로 90일 동안은 정해진 일당이 지급됨.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부모는 최초 390일 동안 정해진 일당을 수령하고 나머지 90일간은 그보다 낮은 수당을 받음.
· 아버지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수당을 받으며 10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아버지의 80%가 이 휴가를 사용.

우위의 성 위계 구조가 존재함.

- **임금격차 해소과정:** 양성평등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주관적인 임금격차를 파악해야함. 전 산업 부문에서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스웨덴의 임금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되지만 실상 많은 업종에서 개인별로 임금을 정하는 관행이 존재함.
 - 임금조사가 완료되면 임금문제에 책임 있는 노동시장 당사자들이 임금평등을 목표로 조사 결과를 검토함.
-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하지만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부모휴가를 실제로 균등하게 쓰도록 하는 부모보험의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봄.”

유아원의 양성평등

-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는 스웨덴의 각급 학교제도에 통합되어 있음. 1969년에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권고가 각급 학교에 내려졌고, 1980년에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새롭게 포함됨. 양성평등이 교과과정의 일부가 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임.
- 블루베리 유아원은 스웨덴 정부의 ‘유아원 양성평등 대표단’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교사들은 양성평등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보육과정을 녹화하기도 하며, 이에 대해 토론하기도 함.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적절한지에 관한 관념은 매우 이른 나이에 각인됨.
- 성별분리는 스웨덴의 학교자체에도 반영되어, 향후 진로선택에도 전통적인 성 역할의 양상이 유지됨. 여교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유아원 단계에서는 낮은 급여 수준을 이유로 남자 교사가 더 드물다.

가정폭력 - 불평등의 산물

- 1998년, 스웨덴 정부는 여성의 존엄성 침해에 관한 새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에게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스웨덴의 여성 보호시설 운동은 1970년대 말에 시작됨. 여성 보호시설은 전통적인 스웨덴 방식으로 발달(여성들은 다른 여성을 돕고 싶어하고 행동에 나서고 조직을 꾸리고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회시스템의 일부가 됨). 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알리고, 그들의 주장을 펴.
- “스웨덴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양성평등의 문제로 파악하지만 다른 나라는 대개 그렇지 않음. 여성 보호시설 및 여타 사회사업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는 전형적인 스칸디나비아적 현상”이라 지적함. (드루데 달러푸프 스톡홀름 대학 교수)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의 싸움

- 국제 통계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인신매매로 벌어들이는 돈은 무기나 마약 밀매 수입과 맞먹음. UN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200만-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희생된다고 추산하고 이 가운데 다수가 어린 소녀와 여성들임.
- 네덜란드, 독일 등은 성매매를 합법화 하였지만 스웨덴은 1999년 1월 좌파당 소속 마리 안네 에릭손의 제안으로 매춘부가 아닌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됨.

- **스웨덴에는 청소년 성교육이나 낙태³⁾에 대한 반대가 없다.** 스웨덴이 UN과 EU에서 낙태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스웨덴 개발 원조의 상당부분이 성적 권리를 위한 운동에 투입되는 것도 이 같이 통일된 국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3) 낙태법: 스웨덴에서는 낙태제한이 1975년에 폐지, 환자가 원할 경우 임신 18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나 낙태를 요청한 여성에게는 시술 전후 상담이 제공되며, 18주 이후 낙태를 하려면 사회복지사의 검토를 거쳐 국가본건 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음. 실질적으로 이는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별첨3. 스웨덴의 야모에 대하여

- 야모 Jämo (스웨덴 평등기회 옴부즈만, The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는 1980년 설립된 이래 스웨덴의 평등기회 및 처우를 감독, 지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야모는 성평등 증진을 위한 성차별 관련 법률, 노동시장, 사회보험 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법률, 부모휴가법에 의거한 불합리한 처우 금지 등을 감독하고 있으며, 감독범위는 35,000명의 고용주, 61개 대학 및 28,000개 학교를 포함함.

- 평등기회 옴부즈만의 장은 정부가 임명함. 옴부즈만의 장은 다른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지위를 지니며, 기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음.

- 평등기회 옴부즈만이 감독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음.
 - ① 성차별에 관한 법률
 - The Equal Opportunities Act
 - The Equal Treatment of Students at Universities Act
 - The Act prohibiting discrimination and other degrading treatment of children and pupils in schools

 - ②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ct
 - 노동시장 (labor market)
 - 사업 착수 및 경영 (starting/running a business)
 - 직업 검정/등록(occupational certification/registration etc.)
 - 고용인/고용주단체 회원자격 (membership in employer's/employee's org.)
 - 상품, 서비스 및 주택 공급 (provision of goods, services and housing)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 사회보험제도 (social insurance system)
-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 학자보조금 (study grants)

③ 불합리한 처우 금지관련 법률

- The Parental Leave Act

별첨 4. 프로그램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사회 :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식**

환영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축사 : 이인식 (여성부차관)

10:20-12:00 **제1세션**

영국의 일가족양립정책 : 현황과 실제

수잔 루이스 (미들섹스대학 교수, 영국)

프랑스의 일가족양립정책 : 원칙, 내용과 성과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파리 제1대학 경제연구소 소장, 프랑스)

토론

안 소피 두반더 (스톡홀름대학 교수, 스웨덴)

김서중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장)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00-13:30 **오찬**

13:30-15:10 **제2세션**

캐나다의 일가족 (불)균형

리안 마흔 (칼튼대학 교수, 캐나다)

일/돌봄 딜레마의 해법 : 네덜란드의 사례

로우라 덴 돌크 (유트레히트대학 교수, 네덜란드)

토론

수잔 루이스 (미들섹스대학 교수, 영국)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10-15:30 **휴식**

15:30-17:10 **제3세션**

누구의 '일과 가족', 누구의 '양립'인가?: 일본의 일가족양립정책
소마 나오코 (요코하마대학 교수, 일본)

한국의 일가족양립과 정책방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파리 제1대학 경제연구소 소장, 프랑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유계숙 (경희대학교 교수)

2008년 8월 26일 화요일

사회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토 팽(토론토대학 교수, 캐나다)

09:30-10:00 등록

10:00-10:20 개회식

사회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영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축사 : 울프 소르마르크 (스웨덴 부대사)

10:20-12:00 제4세션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일-생활 균형
안 소피 두반더 (스톡홀름대학 교수, 스웨덴)

토론

리안 마흔 (칼튼대학 교수, 캐나다)
소마 나오꼬 (요코하마대학 교수, 일본)
김수정 (동아대학교 교수)

12:00-13:30 오찬

13:30-15:10 제5세션

스웨덴의 양성평등과 기회평등 옴부즈만
피아 앙스트림 린드그렌 (야모 부위원장)

스웨덴의 일가족양립 지원

에바 홀트베리 (아스트라제네카 인사담당이사)

토론

로우라 덴 돌크 (유트레히트대학 교수, 네덜란드)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
임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10-15:30 휴식

15:30-17:00 종합토론

사회: 이토 팽 (토론토대학 교수, 캐나다)
전체 참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